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여성가족부 (가족문화과)
연 월 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는 대상을 종전의 ‘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’에서 ‘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’으로 확대하고,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 확대(안 제10조의2제3항)
- 나.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(안 제15조의3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2) 입법예고 :
 3) 행정규제 :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3항제1호 중 “3명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)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) ①·② (생 략) ③ 법 제13조의2제8호에서 “여 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” 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 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12세 이하 자녀가 <u>3명</u> 이상인 사람 2. <u>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</u> <u>사람</u> <u><신 설></u>	제10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<u>2명</u> ----- -- <u><삭 제></u> <u>제15조의3(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</u> <u>시스템의 운영) 여성가족부장관은</u> <u>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</u> <u>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지원통합</u> <u>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</u> <u>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4조의2에</u> <u>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</u> <u>한다.</u>